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나.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함(현행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제12687호, 2014. 5. 28.)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756백만원 확보 예정

국비 2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군비 2,496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9.~11.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를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세입)”을 “(설치와 세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준용규정)”을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u></p> <p><u>제3조(세입)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u></p> <p>1.~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u>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산업단지 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u></p> <p><u>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한다.</u></p> <p><u>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 <u>②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u></p>	<p><u>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u></p> <p><u>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1.~6. (현행과 같음) <u>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삭제></u></p> <p><u><삭제></u></p> <p><u>제9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p><u><삭제></u></p>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지출
- 관련조문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국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비		60	60	60	60	60	300
	군비		2,496	2,500	2,500	2,500	2,500	12,496
	소계		2,756	2,760	2,760	2,760	2,760	13,796
총 비용			2,756	2,760	2,760	2,760	2,760	13,796

3. 관련 의견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19년도 예산 2,756백만원 확보 예정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임 영 수